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4
----------	------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30일

발 의 자 : 이윤희, 오경환, 김혜련,
김진철, 장홍순, 김정자(강서),
최판술, 김기대, 유 용,
김태수, 조상호, 유동균,
최조웅, 최웅식, 맹진영,
유광상, 김창수, 문형주,
우창윤, 박기열 의원(20명)

찬 성 자 : 강성언, 문영민, 이병해,
신원철, 최영수, 김종욱,
오승록, 김구현 의원(8명)

1. 제안이유

-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명확히 하고, 하반기 등록하는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연구단체들의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4조제1항).
- 하반기 등록하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정비하고 중간보고서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안 제11조).
-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단체”를 “해당 연도 연구단체”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을 “연구활동 실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를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를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를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④ (생략)</p> <p>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p>	<p>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p>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과 결과보고서 제출일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윤희 의원(3783-1591)